교원 특별채용 규정

제정 2005. 06. 08.
제6차 개정 2019. 08.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장 제6조 제8항에 따라 상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국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8.16.)

제2조(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06.8.8., 2019.08.16.)

1. 신설학부(과) 및 신설전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
2. 교육 및 연구경력이 우수하거나, 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이 탁월하여 본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인사 (개정 2006.6.12., 2019.08.16.)
3. 임상교원의 경우에는 임상실적이 우수한 전문의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별한 채용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개정 2019.08.16.)

〔전부 '항'을 '호'로 변경 2019.08.16.〕

제3조(자격) ① 특별채용 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08.16.)

1.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거나 정부기관 및 국내외 저명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학위과정 제외)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9.08.16.)
2. 해당 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한의대 임상경력인 경우 3년 이상인 자)
3.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이 「교원인사관리준칙」에서 정한 교원 신규임용 시 필요한 연구실적의 2배 이상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9.08.16.)
   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 최근 4년간 국제저명학술지(SSCI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에 단독,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3편 이상 게재 (개정 2019.08.16.)
   나. 자연·이공·한의·보건계열 : 최근 4년간 국제저명학술지(SCI급)에 단독,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4편 이상 게재(개정 2019.08.16.)

② 〔항 삭제 2019.08.16.〕
(개정 2006.8.8.) (전문개정 2017.1.11., 2019.08.16.)

제4조(추천) 본교의 전임교원은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적임자가 있을 경우 교육연구처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6.8.8., 2019.08.16.)

제5조(서류제출 및 전형방법) ① 특별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 및 전공심사와 면접심사의 전형절차를 거친다. (개정 2006.8.8., 2019.08.16.)

1. 교원임용지원서(개정 2019.08.16.)
2. 자기소개서(개정 2019.08.16.)
3.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개정 2019.08.16.)
4. 연구실적물
5. 특별채용 대상 학과 발전계획서 또는 교육 및 연구계획서(개정 2006.8.8., 2019.08.16.)
6. 자격면허 관련 증서 사본(해당 분야에 한함)〔호 신설 2019.08.16.〕
7. 외국인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소속국 대사관 발행)〔호 신설 2019.08.16.〕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호 신설 2019.08.16.〕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를 둔다. 〔항 신설 2019.08.16.〕

②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는 교육연구처장, 전공교원(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연구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1., 2019.06.25., 2019.08.16.)
③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 대학원장 및 해당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항 신설 2019.08.16.〕
④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채용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9.08.16.)

제7조(회의) 〔조항 삭제 2019.08.16.〕

제8조(심사절차) ①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는 채용대상자의 제출 서류에 의한 전공의 일치성 및 적합성을 심사하며, 심사방법은 교원인사관리준칙의 기초 및 전공심사 방법을 준용한다.
②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는 채용대상 학과(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면접심사대상자는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에 따라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항 신설 2019.08.16.〕
④ 면접심사의 방법, 진행 및 평가는 교원인사관리준칙에 명시된 면접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9.08.16.〕

제9조(임용제청) 총장은 임용 제청 동의자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제청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0조(해촉) 삭제 (2006.6.12)

제11조(채용시기) 특별채용에 의한 교원 신규 임용은 채용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8.8., 2019.08.16.) 〔조명 변경 2019.08.16.〕

제12조(기타)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게는 당해 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하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기획예산과-636, 2005.6.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부칙(기획예산과-570, 2006.6.12)
이 규정은 200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725, 2006.8.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종전 "우수교원 특별채용 규정"의 규정명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1545, 2009.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부칙(기획예산과-636 : 2005. 6. 8)의 ②항은 폐지한다.

부칙(기획예산부-16, 2017.1.13)
이 규정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420, 2019.08.16)

이 규정은 2019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